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현재에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해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1. 안전보호구 착용 필요성

안전보호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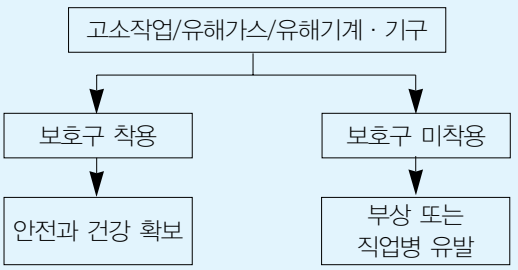

2. 안전보호구의 종류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보호복 등이 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3.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보호구 지급, 착용지시 → 보호구 미착용 → 과태료 부 과

2005. 6. 1부터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4.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

(1) 작업장 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활선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4) 건물의 해체작업

(5)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7)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 설비의 보수 · 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5.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물체의 낙하 · 충격 ·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 사용

(1)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2)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화물의 낙하로 인한 충격으로 발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작업

(4)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대전방지 겸용 안전화)

(5) 활선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절연겸용 안전화)

(6) 기계 · 기구 등에 의하여 발이 끼일 우려가 있는 작업

6.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사용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작업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작업

(3) 궤도작업 차량 작업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위에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에서의 작업

7. 과태료는 이렇게 부과된다.

노동부의 각종 점검, 감독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적발

↓

법 위반 확인(근로자 확인, 날인)

↓

과태료 부과대상 및 의견제출 통지

↓

과태료 부과 결정 및 부과

8. 질의 내용

[질의 1]

모든 안전보호구에 대해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즉시 과태료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 2]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로감독관이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은 후 즉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위반 근로자에게 발부하게 되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질의 3]

근로자가 확인(서명)을 거부하거나 과태료 통보서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도망 포함)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도망갔을 경우, 관리감독자 또는 동료 목격자 등에게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의 4]

과태료가 발부될 근로자의 소재지를 고의 또는 거짓으로 틀리게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속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소재지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로 주소를 틀리게 작성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의 5]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소명(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한다.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실시한다

※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사업주의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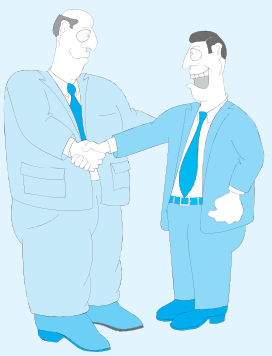
※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